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92 발의연월일: 2025. 4. 4.

발 의 자 : 김윤덕 • 이성윤 • 조계원

임오경 • 윤준병 • 이원택

소병훈 · 정일영 · 임호선

정성호 · 김교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 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를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본문에 따른 선거일 공고 기한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	
는 再選擧(第3項의 規定에 의	
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	
2項에서 같다)는 그 選擧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	
이내에 실시하되, 選擧日은 <u>늦</u>	<u>선</u>
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大統	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領 또는 大統領權限代行者가	이내에
公告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대통령</u>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본문
	에 따른 선거일 공고 기한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일을 공
	<u>고한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